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¹⁾

고문헌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Koh, Moon-Hyun

송실대학교 법과대학(College of law, Soongsil University)

제 출 : 2009년 7월 14일 승 인 : 2009년 11월 26일

국 문 요 약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들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에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들’에서의 ‘사업자들’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 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1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

1) 본 논문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라는 대주제하에서 2009년 6월 5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주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주 제 어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사업자등,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독일환경책임법

Abstract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 Keywords ▣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BEPA Article 31, 'companies etc.', strict (absolute)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damages,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 서론

사업과 산업이 운영되는 환경은, 환경법과 환경규제로 알려진 물속에 잠긴 나무(snags), 덫(snares) 그리고 변화무쌍한 해류 등을 헤치고 항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해도(海圖)에 없는(uncharted) 수로를 통하여 항해하는 것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²⁾ 환경규제의 체계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여 온 환경법이 우리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더욱 더 정밀하게 발전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압축성장을 하였고 이러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 효과인 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겪었다. 한국이 대기오염 등 일부 환경지표에서 세계 환경성과지수(EPI)³⁾에서 총점 79.4로 조사 대상 149개 국가 중 세계 51위 수준이고, 특히 대기오염지표와 이산화황배출량 등의 항목에서 각각 147위, 148위라는 다보스포럼보고서는 우리 환경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⁴⁾

이러한 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막거나 최소한 현재의 환경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환경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환경정책의 암흑기,⁵⁾ 환경정책의 태동기, 환경정책의 발전기, 환경정책의 성숙기 등 여러 갈래로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⁶⁾ 이를 중요 환경관련법 제정을 기준으로 제1기(60년대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공해방지법 시기), 제2기(70년대 환경보전법 시기), 제3기(80년대 환경권 시기), 제4기(90년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복수법 시기),⁷⁾ 제5기(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위한 환경법시기, 2000년~)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바,⁸⁾ 우리나라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2) Berry, James F./Dennison, Mark S. 2000.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 New York: McGraw-Hill. p.3.

3)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2008년 1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는 오존 오염 등 25개 항목으로 각국 환경을 평가한 것이다.

4) 중앙일보 2008. 1. 25. 사설 34면.

5) '선성장 후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환경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지도 못하여 무의사결정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Bachrach, Peter & Baratz, Morton, 1970, *Power and Poverty*, N. Y. : Oxford University Press, pp.58-62 참조.

6) 여기에 관하여는 고문현. 2007. "환경정책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보」. 제44권 제2호. 통권 333호, pp.76-87 참조.

7) 1990년 8월 1일에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고도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많은 환경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8) 박수혁. 1993.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환경법정책".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금강김철수교수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pp.287-290.

관계가 있다.⁹⁾

우리나라 환경법체계는 이른바 복수법주의로 오염종류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여러 개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환경법의 비체계성¹⁰⁾과 비효율성¹¹⁾이다.¹²⁾

환경법의 비체계성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의 모호한 관계가 논의되고 있는데,¹³⁾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원칙 또는 이념이 개별대책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이념은 아직은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¹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법의 실제적 내용 및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제31조¹⁵⁾를 중심으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체계의 문제점¹⁶⁾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1990년에 제정되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독일 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보고자 한다.¹⁷⁾

9) 고영훈. 2002. 『환경법』. 법문사, p.46.

10) 환경법체계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나열적이며, 비체계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수범자인 일반 국민을 비롯한 규제대상자, 심지어 규제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산만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①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② 개별법을 상호간에 중복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 법률들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 ③ 지나치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1) 환경법의 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짜여진 복수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환경보호 및 개선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① 법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분할법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 ② 법체계가 지나치게 규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③ 과도하게 직접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2) 조흥식·송상현·노상환. 1997.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26.

13) 여기에 대하여는 이상돈. 1992.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대책개별법”. 『사법행정』 37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pp.32-39 참조.

14)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반적 표현내용인 “...노력하여야 한다.”,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단순한 권장사항식 표현과 아무런 제재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오늘날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기 쉬운 행정부의 경향상 환경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능에 상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개별 환경법과의 기능적 관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선언적 규정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류지태. 2000. 『환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pp.276-278.

15)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류화신. 2004.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학위 논문, pp.1-81 참조.

16) 여기에 대하여는 김해룡. 200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동 법안 총칙부분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3권 1호, pp.17-33; 박종원. 2009.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안: 총칙을 중심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pp.19-44; 박태현. 2009. “환경정책기본법 각칙편의 재구성에 관한 몇 가지 제안”.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pp.47-69 참조.

17) Himmelmann, Steffen/Tünnesen-Hermes, Christian. 2008. *Umweltrecht in der anwaltlichen Praxis*, Zorneding, BY: Deutscher Anwaltverlag Gm, S. 52; Kloepfer, M., 2004. *Umweltrecht*, 3 Aufl., München: Verlag C. H. Beck, SS. pp.452-501, § 6, Rn. 57-71; Knopp, Lothar, 2004. *Neues Europäisches Umwelthaftungsrecht und seine Auswirkungen auf die deutsch Wirtschaft*, Berlin: Recht und Wirtschaft, S. 100; von Staudinger, Julius /Kohler, Jürgen. 2002.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Umwelthaftungsrecht*, 14 Aufl., Berlin: Gruyter, S. 320.

II.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대한 고찰

1. 개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과 일본의 '공해대책기본법'을 참조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환경입법을 복수법화하는 데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즉, 이 법률은 개별 대책분야의 법률에 대한 모법으로서 환경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시책이 천명되어 있다.¹⁸⁾

환경법의 헌법적 성질을 갖는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법적 성격이 본질상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을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효력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 발견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근거규정인 동법 제11조 제2항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업장 등의 무과실책임 규정인 제31조이다.¹⁹⁾ 이 무과실책임규정은 환경침해의 사법적 구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동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가해자 불명의 공동오염책임을 규정하여 가해자 불명의 선택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있다.²⁰⁾

원론적으로 환경법규를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규제법규와 오염피해를 사후에 복구하려는 구제법규로 구분한다고 할 경우, 규제법규의 중심을 이루는 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규정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더욱이 환경피해와 관련한 구제규정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을 제외하고는 다른 개별 환경법규에 없음을 고려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18) 이상돈. 1993.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21, p.163.

19) 김홍균. 200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환경법연구」 23(1), p.81.

20) 전경운. 2003.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환경법연구」. 25(1), p.33.

규정은 구체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구체적 효력을 갖는 규정을 두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언적 성격을 갖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이 아님은 분명하다.²¹⁾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책임 규정이 환경정책기본법에만 있고 환경책임의 체계와 수단들을 다른 법률들에 구체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규정 자체의 실제법적 효과에 관한 시비를 낳았다.²²⁾ 설사 동 규정에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범위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³⁾

2.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최근에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실정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다수 가지고 있다. 예컨대,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 원자력사업자에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고, 광업법 제91조에서는 광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82조에서는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0호의 해양시설과 해저 광구의 개발 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 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77. 12. 31. 공포된 구(舊) 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후 1990. 8. 1.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위 환경보전법상의 “생명 또는 신체”라는 제한과 민법과의 연계규정을 없애고,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

21)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p.81.

22) 전재경. 2003. 『환경책임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12.

23) 김홍균. 2007. 『환경법-문제·사례』. 흥문사, p.31.

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구 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즉 인체손해에 한해서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던 것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는 보호법익을 생명·신체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침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까지 확대되어 규정하게 되었다.²⁴⁾

위와 같은 규정들은 위험책임의 법리를 실정화한 것으로, 환경오염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환경피해 구제는 충실해질 것이다. 위와 같은 무과실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하여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의 내지 과실의 존재가 위법성 여부나 유지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²⁵⁾

3.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

(1) 구체적 효력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이 구체적인 효력이 있어 과연 그 적용 범위 내의 모든 환경 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²⁶⁾ 모든 환경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함은 환경피해소송을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과실책임으로 이해해온 기존의 다수 학자나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혹자는 구성요건과 효과의 비구체성, 환경정책기본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을 부인하고, 위 규정이 방침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⁷⁾

24) 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p.33.

25)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pp.82-83.

26)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p.84.

27) 이은영, 1995. 『채권각론』, 박영사, p.714; 류지태, 1992. “환경책임법 입법론”. 『공법연구』, 20집, p.316;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나 규정 등의 내용을 볼 때 이 규정이 국민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법상 환경기준에 대한 규제와 환경정책의 지표를 제시하는 행정법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손윤하, 2005.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p.66, p.318 참조.

그러나 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위험책임원리를 근거로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관련한 특수한 법리를 규정한 책임규정으로써, 구체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못 볼 바 없다.²⁸⁾ 더욱이 개별 환경법에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 및 구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위 규정의 구체적 효력을 쉽게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위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오염원인자인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²⁹⁾ 우리 법원도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³⁰⁾

(2) 평가

위 조항에 규정된 '사업장등', '사업자'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 규정이 없는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문제이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판례나 해석론으로 해결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적인 규정인 민법 제750조상의 구성요건인 '고의·과실', '위법성' 등도 판례나 해석론으로 상당 부분 해결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4. 요건

(1) '사업장등'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

'사업장등'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사업장, 기타 모든 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나 증기, 하수·폐수·분뇨종말처리장 또는 방지시설업소,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³¹⁾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업자'에

28) 이상규. 1998. 『환경법론』. 법문사, p.242; 오석락. 1996. 『환경소송의 제문제』. 상영사, p.96;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p.84; 서희원. 2004. 『환경소송』. 북피디닷컴, p.214; 전경운. 2003.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원리". 『환경법연구』 25(2), pp.384-385; 조은래. 2006.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28(3), pp.331-332; 조은래. 2007.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pp.121-124; 조흥식. 1998.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환경법연구』 제20권, pp.305-306. 위험책임의 규정을 특별 입법에 의한 제한적 열거보다는 한정적으로 환경오염의 위험분야를 일반조항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민사책임 규정은 합리성이 있다. 안법영. 1996. "환경오염 사고와 위험책임", 박기갑 외.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소화, pp.316-317.

29)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pp.84-85.

30) 구 환경보전법 제 50조 제60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 대구고법 1990.1.12 선고88 나3049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 대법원 2001.2.9. 선고 99다 55434 판결(여기에 대하여는 전경운. 2002. "환경침해로 인한 위법성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효력-대판 2001.2.9. 선고 99다55434 판결", 『민사법학』, 22호, pp.420-455 참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인천지법 2004.10.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확정).

31) 구연창. 1981. 『환경보전법』. 상영사. p.446.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 등에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6호에서 ‘사업자’를 배출시설 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환경법에서의 관련 규정은 ‘사업장등’ 또는 ‘사업자’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체적인 경우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위 무과실책임은 ‘사업장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업자’ 책임에 국한되므로, ‘사업장등’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는 민법의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고,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근거한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³²⁾

(2)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구 환경보전법상의 ‘생명 또는 신체’라는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란 사업장등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등 인적 손해는 물론이고 물적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피해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계량화하기 힘든 환경가치의 상실을 책임범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고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환경오염’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분쟁조정법은 제2조에서 ‘환경피해’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을 면책조항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환경오염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32)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p.86.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³³⁾ 누적적 손해나 격지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³⁴⁾

5. 공동불법행위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피해를 야기한 경우 과연 누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공동불법책임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행위자 각각의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으로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³⁵⁾

그러나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의 만성적·누적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특수한 법리가 요구되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의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특기할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업장등’ 또는 ‘사업자’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볼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는 것보다 피해구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³⁶⁾

33) 전경운 교수는 불가항력(höhere Gewalt)에 의한 손해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배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pp.36-37; 그러나 조흥식교수는 불가항력에 의한 환경침해의 경우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새긴다. 조흥식, 앞의 글, p.308.

34) 류지태, 1992, “환경책임법입법론”, 『공법연구』, 20집, p.316.

3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45767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판결;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1989.5.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곽윤직, 1995, 『채권각론』, 박영사, 766면. 이에 반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내지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은영, 앞의 책, 612-613면.

36) 김홍균, 앞의 책, 40면.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이해되고 있다.³⁷⁾ 따라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가해자 가운데 임의의 1인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모든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가해자 사이의 내부적 분담부분은 각자의 오염물질 배출정도, 즉 관여도에 따라 결정되며,³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경 피해에 기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는 공장들에서 배출된 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불법책임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고 있다.³⁹⁾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 법리는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물질을 소량 배출한자도 엄격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 영세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판례로써 인정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책임이론(market share theory)⁴⁰⁾을 타산지석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7) 대법원 1995.10.12. 선고 93다31078 판결; 대법원 1983.5.24. 선고 83다카208 결정; 박윤직, 앞의 책, 766-769면.

38) 이은영, 앞의 책 p.716.

39) 위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는 저유황유를 쓰거나 그 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연료로 대체시키고, 또 이황산가스의 배출을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고, 불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생산공정을 바꾸거나 가스제거시설을 하는 등 위 각 가스의 생성 및 확산 방지 내지는 감소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오염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보상책만 강구한 채 만연히 위 가스를 배출시켜 그 오염의 피해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가 인근 토지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폐농상태에 이르게 한 사례. 대구고법 1987. 1. 16. 선고 85나111 판결]; 피고들의 공장에서 배출된 공해물질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오염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구체적인 발병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적어도 장차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었고 이는 통사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환경오염을 초래한 피고들의 행위는 생활환경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및 환경보전법 제6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온산공단 사건: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카26607, 26614 결정].

40) 시장점유율 책임이론이란 공동피고들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동피고들 각자에게 총생산품시장 판매에 대한 각자의 시장점유율에 상응하는 비율의 책임을 지우는 이론이다. *Sindell v. Abbott Laboratories*, 607 F.2d 924(Cal. 1980).

Ⅲ.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향

1. 개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1990년에 제정된 후 잘 시행되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Umwelthaftungsrecht)에 비추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독일 환경책임법을 참조하는 이유

1986년의 체르노빌원자로사고와 라인강에 대한 유독소방액유입으로 인한 어류폐사사건 등과 같이 환경오염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부터 환경책임법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어 드디어 헤센(Hessen)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가 연방상원(Bundesrat)에 주입법안을 제시한 데 이어, 독일연방정부도 독자적으로 환경민사책임법에 관한 초안을 완성하였고, 이 초안은 다소 수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독일 환경책임법을 참조하는 이유는 첫째로, 한국의 법률체계가 기본적으로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도입이 용이하고, 둘째로 환경책임법은 독일이 제일 먼저 입법을 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기 때문에 참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에 1개의 조문 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환경책임법(총 제23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지고 있는 독일을 참조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매우 크다.

3. 개정방향

(1) 사업자 등에서의 사업자 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에서의 사업자 등, 환경오염, 피해의 발생으로서 손해의 종류와 내용 등의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⁴¹⁾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41) 전경운. 2003.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환경법연구」, 25(1), p.34.

이러한 논란은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로 동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장이나 사업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자칫 국가 경제 내지 산업 발전을 지나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큰 유해·위험시설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²⁾ 사업장의 규모, 연료 사용량, 배출량 등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고의·과실의 문제

환경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불법행위법은 과실책임 원칙으로 하며,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침해, 특히 환경오염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을 침해하는 기업은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규의 형식적인 준수를 근거로 과실 없음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과실에 대한 입증을 더욱 어렵게 한다.⁴³⁾ 그렇다고 해서 과실책임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정당한 근거의 존재 여부가 각각의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법적 안정을 기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별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광업법 제91조, 수산업법 제76조, 원자력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등 환경오염분야에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많은 특별입법이 있다. 또한 이 무과실 책임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위험원에 대한 지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에서 두고 있다.

그러나 단 1개의 조문을 통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과실책임이 적용된다면, 그것이 다양한 환경오염의 원인 또는 주체의 그 어느 것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과 무과실책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해자와 상대적으로 두터운 보호를 받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는 과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42)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에 의해 오염지역 정화를 위한 초기금을 석유·화학회사로부터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3) 윤용석, 1994.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신법연구』, 11(1), p.72.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 환경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⁴⁴⁾이 아니라 시설책임⁴⁵⁾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될 수 있는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일반적 규정을 포기하고 해당되는 시설의 종류를 별표 I 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⁴⁶⁾ 위험한 행위(오염물질의 방출)에 연결하여 행위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 대상 주체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시설에 연결하여 시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한다. 입법상 열거주의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것이지만, 독일민법은 동법 제823조에서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법익을 역시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열거주의는 그만큼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가해자에게 자기가 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예견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일단의 결정은 무과실책임이 부과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

44) 행위책임은 사람의 위험한 행동과 연결이 되는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로서 연료공급시의 하자로 인하여 흘러나온 연료유를 통한 손해나, 사업자에 의한 물·토양에 대한 위험물질의 투기에 의한 손해 등을 말한다. 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p.69, 각주91).

45) 시설책임은 객관적으로 제한된 위험영역으로서 시설과 관련된 책임으로서 표현될 수 있고, 시설책임은 시설로부터 유해물질이 피해지에 도달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p.69, 각주91).

46) 환경책임법 제1조를 위한 별표1에는 96가지의 시설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96종의 시설유형은 i) 열의 생산·채광(採鑛)·에너지, ii) 돌과 흙·유리·세라믹·건축재, iii) 강철·철 또는 가공을 포함하는 기타의 금속, iv) 화학제품·약품·원유정제와 기타 가공, v) 유기물을 사용한 표면가공·합성수지로 부터 띠모양의 물질의 가공·기타 수지와 합성수지의 가공, vi) 목재·펄프, vii) 식량·기호품과 사료·농업적인 생산물, viii) 폐기물과 잔존물, ix) 저장·물질의 반출, x)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한 시설에만 위험책임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책임구성 요건은 증가된 위험의 근원으로서 항상 일정한 기술적 시설에 한정된 독일의 법전통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위험과 결합되지 않은 시설은 위험책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위험책임 일반사상에 근거하는 것이다. 즉 환경책임을 발생시키는 시설물의 대부분이 일정한 생산능력의 도달 또는 일정한 시설규모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지 일정한 규모의 엠뷸시온만이 환경오염적이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거는 시설의 체계적인 위험구조에서 근거한 것이므로 확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추해석에 의한 확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pp.42-43.

로 보인다.⁴⁷⁾ 다만 그 대상주체가 '사업자'에 제한되고 있는데, 잠재적 가해자의 거의 모두가 사업자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무과실책임이 적용된다는 점만을 밝힐 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의 조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⁴⁸⁾

(3)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동법 제5조에 의하면, "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조업되고 있는 때에는 물건에 대한 침해가 비본질적이거나 장소적 관계에 비추어 인용가능한 정도이면 물적 손해배상의무는 배제된다."고 한다. 즉, 물적 손해에 있어서 책임배제는 규정에 적합하게 조업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환경책임법 제6조 제2항 제2문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조업의 장애 또는 조업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제6조 제3항)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⁴⁹⁾

여기서 물적 손해는 동물을 포함한 동산과 부동산의 유체물에 대한 침해이다. 책임제한은 물건의 상태와 가치에 연관되는 것이다. 환경책임법 제5조 배제조항에 해당되면, 그것이 결과책임으로 설명되는 한(限) 물적 손해는 배제된다. 반대로 물적 손해가 인적 손해의 결과인 때에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⁵⁰⁾ 제5조에 의한 침해에서 결정적인 것은 비본질적이고 장소적 관계에 기대가능한 침해의 경우에 관한 것이다.

(4) 인과관계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건의 특성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총동원하더라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따른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47) 윤용석, 앞의 글, p.74; 최상호, 1998,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의 비교 고찰", 「민사법학」, 제16호, p.365.

48) 윤용석, 앞의 글, p.73.

49) Salje, Peter, 1993, *Umwelthaftungsgesetz*, Muenchen: C. H. Beck, § 5, S. 171, Rn. 3.

50) Salje, Peter, aaO., § 5, S. 171, Rn. 4.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개연성설(蓋然性說), 신개연성설 및 입증책임의 전환론 등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입법적인 근거를 사실상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상의 명확성을 기할 수 없어 법적 안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독일 환경책임법은 '인과관계의 추정'의 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즉, "시설이 개별적인 경우의 여건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를 야기하기에 적합하면 그 손해는 이 시설을 통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적합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손해발생의 시간 및 장소, 손해의 양상과 기타 손해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추정의 효력은 결국은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독일 환경책임법은 이를 위해 가해자(시설보유자)가 행정규범을 준수하는 소위 정상조업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추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정'이 손해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인과관계추정의 효력을 배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제6조 제2항). 이러한 인과관계의 추정의 배제는 정상운영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고, 환경책임법 제6조 제2항과 제3항의 특별한 운영의무의 준수와 이러한 준수를 계속 감독하고 아울러 문서로써 작성토록 하는 유인을 시설보유자에게 제공하게 된다.⁵¹⁾

복수의 시설이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다른 정황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은 배제된다. 이러한 적합성은 손해발생의 시기와 장소, 손해의 태양과 기타 개별적으로 손해의 원인을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제7조 제1항).

(5) 정보청구권

환경손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환경침해가 있었고, 이 환경침해가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도 많은 정보와

51) 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p.53.

지식을 가진 피고의 반증이나 주장이 있으면 피해자를 위한 법적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접근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⁵²⁾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통상 가해자측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정보청구권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서 가해자측의 ‘영업상의 비밀의 유지’라는 다른 보호법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이다.⁵³⁾

독일 환경책임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시설보유자)에게도 관련 관청이나 다른 시설보유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⁵⁴⁾ 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의 조절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994년부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법(Umweltinformationsgesetz)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⁵⁵⁾ 민사책임을 규율하는 환경책임법에서 공법적 성격을 갖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법인 환경정보법에 의한 정보의 공개가 민사책임상의 요건의 충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⁵⁶⁾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2) 윤용석. 앞의 글. p.76.

53) Kloepfer, M., 2004, *Umwelrecht*, 3 Aufl., München: Verlag C. H. Beck, SS. 468-469, § 6, Rn. 107.

54) 피해자에게 부과된 시설의 손해발생적합성의 입증과 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독일 환경책임법은 피해자에게 시설보유자 및 일정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8조-제10조). 이는 피해자가 환경책임법 제6조에 의하여 손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의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자료는 거의 모두가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정보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55면 참조; 정보청구권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제8조). 둘째, 피해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제9조). 셋째,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제10조).

55)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최상호. 1998.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의 비교고찰”. 「민사법학」. 제16호, pp.378-379. 참조.

56) 최광준. 2006. “환경책임법의 기본구조와 기본내용”. 「재산법연구」. 21(2), p.325.

(6)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책임의 배제

독일환경책임법 제4조(책임의 배제)에 따르면, “배상책임은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의 개념이 문제되는 바, 불가항력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왔다.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어느 예외적인, 조업과 무관한, 자연적 힘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이끌어진 사건 - 인간의 관점과 경험에 따르면 예견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단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의를 통하여도 회피되거나 방지될 수 없는 사건.'⁵⁷⁾ 위의 개념에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제시된다.

① 조업과 무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Betriebsfremdheit)

시설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른바, 조업과 무관한 사건만이 책임의 배제로서 주목된다.⁵⁸⁾ 조업에 특별한 위험원인들은 조업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조업 중에 발생한 것인가 또는 조업설비와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가의 여부이다. 불가항력의 주된 사례는 지진이나, 해일, 산사태 등의 자연적 사건의 침해이다. 정부법안이유서에서는 눈사태, 번개, 새의 비행도 여기에 포함되며, 보호대책이 가능하고 기대될 때에는 그 자연력은 배제된다고 한다.

조업발생의 외부에 있어서 조업과 무관한 제3자의 행위 역시 자연력에 의한 책임배제로 볼 수 있다.⁵⁹⁾ 예컨대, 무장공격 또는 방화 또는 일반적 암살과 사보타주행위 등이다. 그러나 근로자 또는 방문인이나 배달인과 같은 권한 있는 제3자를 통한 방화 및 사보타주는 조업내적인 위협에 해당한다.

② 초일상성(Außergewöhnlichkeit)

외부로부터의 침해는 불가항력의 존재를 위한 결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건이다.⁶⁰⁾ 그것은 일상적 관행을 넘어선 사건을 요구한다. 사건의 초일상성은 그의예외적 성격과 일치되게 보기 드물게 발생되어야 한다. 소유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이 위협과 상호 연관되는 모든 사건들은 책임배제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57) BGHZ 7, 338 f.; BGH NJW 1986, 2312, 2313; Salje, Peter, aaO., § 4, S. 160, Rn. 70에서 인용.

58) Salje, Peter, aaO., § 4, S. 160, Rn. 8.

59) Salje, Peter, aaO., § 4, SS. 160-161, Rn. 10.

60) Salje, Peter, aaO., § 4, SS. 162-163, Rn. 12.

③ 불가피성(Unabwendbarkeit)

보호조치의 의무는 시설의 소유자에 해당된다. 이것은 손해가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일어났음을, 즉 조업과 무관하고, 초일상적이며 불가피함에 해당함을, 제시하고 증명하여야 한다.⁶¹⁾ 불가피성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단과 함께 가장 상황에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주의를 통하여 예방될 수 없는 때에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전보준비(填補準備, Deckungsvorsorge)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독일 환경책임법 제19조 제1항),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책임보험에의 가입. 둘째, 연방 또는 주에 의한 책임의 인수나 보증. 셋째, 신용기관에 의한 책임의 인수나 보증. 결국 독일 환경책임법은 시설보유자에게 단지 '잠재적 가해자'라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전보준비의 의무를 지움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8) 가칭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⁶²⁾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판례로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 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관련 규정(제31조)의 삭제를 의미하는바, 관련 규정에 대한 선부른 삭제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책임법의 제정 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1) Salje, Peter, aaO., § 4, S. 163, Rn. 13.

62) 환경책임을 총괄하는 별도의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류지태. 1992. "환경책임법입법론". 『공법연구』. 제20집, pp.296-297; 조일환. 1993. "환경권보호의 사법적 실효화를 위한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제202호, pp.54-67; 오석락. 1993. "환경책임법 시안". 『환경법연구』. 제15권, pp.157-180; 김홍균, 2001.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법조』, 50(1), pp.65-107; 전경운.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pp.27-77; 전재경. 2003. 『환경책임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1-175 참조.

(9) 환경정책기본법에 별도의 환경책임에 관한 장 신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 가능성과 다른 선언적 규정과의 부조화 그리고 '사업장 등', '사업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중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등 법기술적인 문제까지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칭 '환경책임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법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⁶³⁾

I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추어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1986년의 체르노빌원자로사고와 그 후에 잇달아 발생한 라인강에 대한 유독소방액유입으로 인한 어류폐사사건 등과 같이 환경오염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1990년 12월에 독일의 환경책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1989년 3월 미국의 엑손 발데즈(Exon Valdez)호 사건이 수십 년이나 끌어오던 2중선체구조에 관한 논의를 종결시키는 기름오염방지법(Oil Pollution Act of 1990)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⁶⁴⁾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입법제정사를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안타까운 경험이 있다. 2009년 8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약 50여 개 법률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법률들 중 상당수가 '환경위기'⁶⁵⁾를 타개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적으로 제정되었다.⁶⁶⁾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리의 국력에 부응하는 환경법을 가져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그 중의 대표적인 법이 환경책임과 관련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가칭 환경책임법이 단군 이래의 초대형 환경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서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구해 본다.

63)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pp.96-97.

64) 이장기. 2002. "미국의 기름오염관계법에 관한 소고".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3(1), p.245.

65) Carson여사를 중심으로 오늘의 환경위기가론이 형성되었다. Carson, Rachel. 1962. *Silent Spring*, Boston: Riverside Press, pp.21-22; Senatori, Megan A., 2004, "The Second Revolution: The Diverging Paths of Animal Activism and Environmental Law", in: Goldstein, Robert J.(ed.), *Environmental Ethics and Law*, Burlington: ASHGATE, p.626.

66) 홍준형. 2005. 『환경법』. 박영사. p.1056.

참고문헌

- 고문현. 2007. “환경정책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보』. 제44권 제2호. 통권 333호, pp.76-87.
- 고문현. 2009.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향”.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pp.73-97.
- 곽윤직. 1995. 『채권각론』. 박영사, pp.766-769.
- 구연창. 1981. 『환경보전법』. 삼영사, pp.446.
- 고영훈. 2002. 『환경법』. 법문사, , p.46.
- 김해룡. 200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동 법안 총칙부분을 중심으로-”. 『환경법 연구』. 제23권 1호, pp.17-33.
- 김홍균. 2001.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법조』. 50권 1호, pp.65-107.
- 김홍균. 200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환경법연구』 제23권 1호, pp.81-84. p.86. pp.96-97.
- 김홍균. 2007. 『환경법-문제·사례-』. 홍문사, p.31면. p.40면.
- 류지태. 1992. “환경책임법 입법론”. 『공법연구』. 20집, pp.296-297, p.316.
- 류지태. 2000. 『환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pp.276-278.
- 류화신. 2004.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pp.1-81.
- 박수혁. 1993.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환경법정책”.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금량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p.288.
- 박종원. 2009.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안: 총칙을 중심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pp.19-44.
- 박태현. 2009. “환경정책기본법 각칙편의 재구성에 관한 몇 가지 제안”.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발표문, pp.47-69.
- 서희원. 2004. 『환경소송』. 북피디닷컴, p.214.
- 손윤하. 2005.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p.66, p.318.
- 안법영. 1996. “환경오염 사고와 위험책임”. 박기갑 외.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소화. pp.316-317.
- 오석락. 1993. “‘환경책임법’ 시안”. 『환경법연구』. 제15권, pp.157-180.

- 오석락. 1996.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p.96.
- 윤용석. 1994.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1호. pp.72-74, p.76
- 이상규. 1998. 「환경법론」. 법문사, p.242.
- 이상돈. 1992.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대책개별법”. 「사법행정」. 37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pp.32-39.
- 이상돈. 1993.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21집, p.163.
- 이은영. 1995. 「채권각론」. 박영사, p.714, p.716.
- 이장기. 2002. “미국의 기름오염관계법에 관한 소고”.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3권 1호. p.245.
- 전경운. 2003.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환경법연구」. 제25권 제1호. pp.27-77.
- 전경운. 2003.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원리”.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 pp.384-385
- 전경운. 2002. “환경침해로 인한 위법성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효력-대판 2001.2.9. 선고 99다55434 판결-”. 「민사법학」. 22호, pp.420-455.
- 전재경. 2003. 「환경책임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1-175.
- 조은래. 2006.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28권 제3호, pp.331-332.
- 조은래. 2007.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pp.121-124.
- 조일환. 1993. “환경권보호의 사법적 실효화를 위한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제202호. pp.54-67.
- 조흥식· 송상현· 노상환. 1997.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I」.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p.26.
- 조흥식. 1998.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환경법연구」 제20권, pp.305-306. p.308.
- 최광준. 2006. “환경책임법의 기본구조와 기본내용”. 「재산법연구」. 제21권 2호, p.325.
- 최상호. 1998.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의 비교고찰”. 「민사법학」. 제16호, p.365. pp.378-379.
- 홍준형. 2005. 「환경법」. 박영사, p.1056.
- Bachrach. Peter & Baratz. Morton. 1970. *Power and Poverty*. N. Y. : Oxford University Press, pp.58-62.

- Berry. James F./Dennison. Mark S.. 2000.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 New York: McGraw-Hill. p.3.
- Carson. Rachel. 1962. *Silent Spring*. Boston: Riverside Press, pp.21-22.
- Himmelmann. Steffen/Tünnesen-Hermes. Christian. 2008. *Umweltrecht in der anwaltlichen Praxis*. Zorneding. BY: Deutscher Anwaltverlag Gm, S. 52.
- Kloepfer. M.. 2004. *Umweltrecht*. 3 Aufl.. München: Verlag C. H. Beck.. SS. 452-501. § 6. Rn. 57- Rn. 212.
- Knopp. Lothar. 2004. *Neues Europaeisches Umwelthaftungsrecht und seine Auswirkungen auf die deutsch Wirtschaft*. Berlin: Recht und Wirtschaft. S. 100.
- Salje, Peter. 1993. *Umwelthaftungsgesetz*. Muenchen: C. H. Beck. § 4. SS. 160-163 Rn.7-Rn. 8., Rn. 10., Rn. 12.-Rn. 13. § 5, S. 171, Rn. 3-Rn. 4.
- Senatori, Megan A.. 2004. "The Second Revolution: The Diverging Paths of Animal Activism and Environmental Law", in: Goldstein, Robert J.(ed.), *Environmental Ethics and Law*, Burlington: ASHGATE, p.626.
- von Staudinger, Julius /Kohler, Jürgen. 2002.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Umwelthaftungsrecht*, 14 Aufl., Berlin: Gruyter, S. 320.